#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149

발의연월일: 2024. 12. 31.

발 의 자:이해민 · 민병덕 · 김준형

김재원 · 김 현 · 서왕진

김선민 • 이정헌 • 차규근

백선희 • 신장식 의원

(11인)

#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방송문화진흥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9명의 이사로 구성되며, 이사는 방송에 관한 전문성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 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고 있음.

그러나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를 추천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의 구성이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어 방송문화 진흥회뿐만 아니라 방송문화진흥회가 지배주주로서 사실상의 임명권 을 가지는 문화방송 사장의 정치적 중립성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방송통신위원회의 후견주의를 배제하고 오로지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직접 이양받은 국회의 추천과 대통령의 임명으로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가 임명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려는 것임.

또한, 문화방송 사장의 선임은 공영방송의 주인인 시청자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설립하여 사장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하고, 이사회는 특별다수제와 결선투표 등의 절차를 거쳐 사장을 임명제청하도록 하여 사장의 선임 과정이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의 수를 13명으로 증원하고, 이사는 국회의장이 1명,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6명, 그 외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가 국회의원 의석수 비율에 따라 6명을 추천하여 대통령이 임명함(안 제6조제1항 및 제4항).
- 나. 이사회는 진흥회 이사의 해임제청 및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 자인 방송사업자의 사장 임면 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 로 의결함(안 제9조제4항 단서 신설).
- 다. 이사회의 기능에 이사의 해임제청, 사장의 임면, 사장후보국민추천 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10조 및 제10조의2).
- 라.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10조 의3 신설).
- 마.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사장은 임기를 3년 으로 하고, 직무수행이 매우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그 임기를 보장하도록 함(안 제10조의4 신설).

#### 법률 제 호

#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본문 중 "9명의"를 "13명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한다"를 "국회에서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면한다"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국회는 이사를 추천할 때 국회의장이 1명,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6명, 그 외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가 국회의원 의석수 비율에 따라 6명을 추천한다. 다만, 보궐이사의 경우 전임자를 추천한 주체가 추천한다.

제9조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0조제5호에 따른 이사의 해임에 관한 사항 및 제10조제11호에 따른 사장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제5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12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1호(종전의 제10호) 중 "추천에"를 "임면에"로 하고, 같은 조에 제1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8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이사 해임에 관한 사항

11의2. 제10조의3의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구성과 운영 제10조의2의 제목 중 "추천"을 "임면"으로 한다.

제10조의3 및 제10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0조의3(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설치 등) ① 이사회에 진흥회가 최 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사장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한 국민위원회 (이하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이사회는 공개모집 등을 통하여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공정하게 구성되도록 하여야 하며,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 ③ 이사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장의 임기만료 90일 전까지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 ④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는 사장후보자를 3명 이하의 복수로 추 천하여야 한다.
  - ⑤ 이사회는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추천한 3명 이하의 복수의 사장후보자에 대하여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최종후보 자 1명을 선정해 임명한다.
  -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사장 임명에 관한 사항이 추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2회 이상 부결되는 경우에는 마지막 투표 시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되, 다수득표자를 임명한다.
  - ⑦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의 사장후보자 추천 및 이사회의 사장

임명 시 그 절차와 과정은 공개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진행하여야한다.

- 8 그 밖에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 사장후보자 추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가 정한다.
- 제10조의4(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사장의 임기 등) ①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
  - 1.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방송법」 제1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3.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
  - 4. 회계부정이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의 운영에 지장을 초 대하는 경우
  - 5.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매우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호 중 "이사 추천 및 감사 임명"을 "감사 임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이사 및 감사 임명"을 "감사 임면"으로 하며, 같 은 조 제4호 중 "사장·이사 및 감사의 임명"을 "감사 임면"으로 한 다.

# 신・구조문대비표

혂 행 개 정 아 제6조(임원) ① 진흥회에는 임원 제6조(임원) ① -----으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9명 의 이사와 감사(監事) 1명을 두 📗 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 다. 다만,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다. ② · ③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④ 이사는 방송에 관한 전문성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임 -----국회에서 추천하고 명한다. <후단 신설> 대통령이 임면한다. 이 경우 국 회는 이사를 추천할 때 국회의 장이 1명,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6명, 그 외 교섭단체와 비교섭 단체가 국회의원 의석수 비율 에 따라 6명을 추천한다. 다만, 보궐이사의 경우 전임자를 추 천한 주체가 추천한다. (5) • (6)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제9조(이사회의 구성) ① ~ ③ 제9조(이사회의 구성) ① ~ ③ (생 략) (현행과 같음)

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u>단서</u>신설>

⑤ • ⑥ (생 략)

제10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지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 결한다.

1. ~ 4. (생 략) <u><신 설></u>

5. ~ 9. (생 략)

10.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 송사업자의 사장 <u>추천에</u> 관한 사항

<신 설>

<u>11.</u> (생 략)

제10조의2(진흥회가 최다출자자 저인 방송사업자의 사장 <u>추천</u>) ①・② (생 략) <u><신 설></u>

| <b>4</b>                            |
|-------------------------------------|
|                                     |
| 10조제5호에 따른 이사의 해임                   |
| 에 관한 사항 및 제10조제11호                  |
| 에 따른 사장의 임면에 관한                     |
| 사항은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                   |
| 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⑤·⑥ (현행과 같음)                        |
| 세10조(이사회의 기능)                       |
|                                     |
|                                     |
| 1. ~ 4. (현행과 같음)                    |
| 5. 제8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                   |
| 는 이사 해임에 관한 사항                      |
| <u>6.</u> ∼ <u>10.</u> (현행 제5호부터 제9 |
| 호까지와 같음)                            |
| <u>11.</u>                          |
| 임면에                                 |
|                                     |
| 11의2. 제10조의3의 사장후보국                 |
| 민추천위원회 구성과 운영                       |
| <u>12.</u> (현행 제11호와 같음)            |
| 세10조의2(진흥회가 최다출자자                   |
| 인 방송사업자의 사장 <u>임면</u> )             |
| ① • ② (현행과 같음)                      |
| 세10조의3(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                   |
|                                     |

회 설치 등) ① 이사회에 진흥

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사장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한 국민위원회(이하 "사장후보 국민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이사회는 공개모집 등을 통하여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공정하게 구성되도록 하여야 하며,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 ③ 이사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장의 임기만료 90일 전까지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 ④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는 사장후보자를 3명 이하의 복수 로 추천하여야 한다.
- ⑤ 이사회는 사장후보국민추천 위원회가 추천한 3명 이하의 복수의 사장후보자에 대하여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 으로 최종후보자 1명을 선정해 임명한다.
-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사장 임명에 관한 사항이 추천일로

<신 설>

부터 30일 이내에 2회 이상 부 결되는 경우에는 마지막 투표 시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 하여,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 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 투표를 하되, 다수득표자를 임 명한다.

- ①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의 사장후보자 추천 및 이사회의 사장 임명 시 그 절차와 과정 은 공개적이고 투명한 방식으 로 진행하여야 한다.
- 8 그 밖에 사장후보국민추천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 사장 후보자 추천 등에 필요한 사항 은 이사회가 정한다.
- 제10조의4(진흥회가 최다출자자 인 방송사업자의 사장의 임기 등) ①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사장의 임기는 3 년으로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 한다.

- 1.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방송법」 제1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3.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 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
- 4. 회계부정이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의 운영에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5.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매우 곤란하게 되거나불가능하게 된 경우